

발간등록번호 : 11-B370019-000011-14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
KOREA LIBRARY ASSOCIATION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Korean Library Association

서 문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는 각국의 헌법상에 보장하는 기본권과 도서관 철학의 토대이자 사서직 윤리강령의 핵심 가치로서 그 맥을 같이 한다.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로 도서관 이용에 차별하지 아니하며 모든 정보와 사상, 그리고 창작물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도서관은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사서는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제공하며, 검열에 반대하고 사상의 자유를 증진하는 주체로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늘날 도서관 지적자유 개념은 도서 검열을 넘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필터링, 도서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도서관 폐쇄, 테러 위협 등), 도서관 공간,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료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다.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도서 검열에 대한 이슈는 도서관 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상황, 분단, 독재 등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금서와 검열로 대표되는 사상통제의 역사를 거쳐 왔고, 이에 따라 이른바 이념 서적이라 불리는 도서가 금지되는 등으로 인하여 지적자유에 관한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주요 도서관 선진국의 도서관협회 및 국제도서관 협회연맹을 중심으로 1930년대부터 지적자유와 관련된 문건을 채택·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997년에 제정하고 2019년에 개정한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 선언」에서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정보제공과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도서관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적자유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도서관계의 논급은 2023년 7월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라 할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은 국내 도서관계에서 처음으로 발간되는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지침서이다.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국내 관종별 도서관의 지적자유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적자유 침해 상황이 복잡·다양한 가운데 도서관 현장에서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의 작성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본 자료는 1974년 초판을 발간한 이래 10차(2021년)에 걸쳐 내용을 갱신하고 있는 미국도서관협회의 「지적자유 매뉴얼」을 모티브로 삼았다. 국내·외 도서관계는 사서직의 실천윤리이자 학술연구의 주제로 독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도서관 지적자유 개념을 확장해 왔으며,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그 정의를 조금씩 수정해 왔다. 이는 변화된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도서관 지적자유를 해석하여 그 한계를 재정의하고 폭넓게 대처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의 발간은 완결편이 아니며 앞으로도 차기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를 통하여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동참해 주신 한국도서관협회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 객승진 회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가이드라인 집필에 참여해 주신 한상우 교수 외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 위원들께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또한 앞으로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지적자유와 관련한 활발한 논의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도서관 현장의 모범 사례가 수합되어 추후 개정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나아가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서직의 자료선정권 침해와 자기검열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하고, 자료서비스의 위축과 전문가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출판계, 독서계, 작가 및 문인협회, 전문가 단체 등이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2024. 8. 1.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 위원장

김신영 교수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차례 Contents

1. 배경과 필요성	9
2. 도서관 지적자유와 검열	11
2.1 지적자유	11
2.2 검열	17
2.3 금지도서	19
2.4 간행물윤리위원회	20
3.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24
3.1 기본 방향	24
3.2 자료선정과 수집	26
3.3 도서관서비스	27
3.4 위원회 운영 및 보호	27
3.5 자료 재심의	28
4. 향후 과제	33
참고문헌	35



배경과 필요성

도서관은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도서관 및 사서직의 권리선언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제공해 왔다. 또한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의 이유로 도서관 이용에 차별하지 아니하며, 모든 정보와 사상, 그리고 창작물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최근 특정 단체가 도서관을 대상으로 금서목록을 만들어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고 책임자나 수서 담당 사서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상위기관의 명령이나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자료를 검색배제, 이용 불가 처리, 이관, 제척하는 등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반하는 요구로 인해 전문직 사서의 자료선정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외압은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다른 이용자의 지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2023년 7월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지적자유 침해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도서 검열로 인하여 현장 사서는 전문가적 자존감 상실과 사기 저하, 법적 소송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도서

관과 사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자기검열 형태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수 없고, 도서관 밖의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며, 이를 통하여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도서관 현장의 일관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도서관 지적자유위원회는 앞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일어나는 지적자유 침해 사례를 수합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도서관 지적자유와 검열

2.1 지적자유

- 최근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의 개념은 도서 검열을 넘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필터링, 도서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도서관 폐쇄, 테러 위협 등), 도서관 공간,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료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다.
- 도서관계는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지적자유 정의의 범위를 조금씩 수정·확장해 왔으며, 이는 변화된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지적자유를 해석하여 그 한계를 재정의하고 폭넓게 대처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 일찍부터 지적자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미국은 사서직의 실천윤리이자 학술연구의 주제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독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그 개념을 확장해 왔다. 지적자유에 대한 미국 도서관계의 입장은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의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 「윤리강령」(Code of Ethics), 「독서의 자유선언」(Freedom to Read), 「도서관: 미국의 가치」(Libraries: An American Value)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먼저, 1930년대 확산된 사상통제 및 검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도서관협회(ALA)는 1939년 「도서관관리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1944, 1948, 1961, 1967, 1980, 1996, 2019)을 거쳤다.

2019년 최종 개정된 선언문에는 창작에 관여한 사람들의 출생, 경력, 견해를 이유로 도서관 자료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도서관 이용권리는 그들의 출생, 연령, 경력, 견해 등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39년 발표된 「윤리강령」(1981, 1995, 2008 개정)에서 사서는 지적자유와 정보접근의 자유에 헌신하는 전문직으로서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함을 명시하여 도서관 지적자유를 옹호하는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 미국도서관협회(ALA)의 「도서관권리선언」에 영향을 받은 일본도서관협회(日本図書館協會)는 1954년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으며, 1979년에 개정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개정 내용은 헌법이 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상통하는 개념으로 도서관의 ‘알 자유(知る自由)’를 규정한 것으로 ① 인권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시, ② 외설출판물 판결 확정 시, ③ 기증·기탁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자료일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 자료를 배제·제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 그 외에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다.
 - ✓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의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문」(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1999) <표 1> 참조.
 - ✓ 캐나다도서관협회연맹(Canadian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의 「지적자유에 관한 입장문」(Intellectual Freedom Position Statement, 1974 채택, 1983, 1985, 2015, 2016, 2019 개정).

- ✓ 네덜란드도서관협회(Netherlands Association of Librarians)의 「공공도서관 사서 헌장」(Professional Charter for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1993).
- ✓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의 「정보접근의 자유에 관한 선언」(Free Access to Information Statement, 2001 채택, 2007, 2015, 2018 개정).
- ✓ 영국도서관정보전문가협회(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의 「지적자유, 정보접근과 검열」(Intellectual Freedom, Access to Information and Censorship, 2005).
- ✓ 스페인문헌정보협회(Spanish Association for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의 「사서·정보전문직 윤리강령」(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2013).

〈표 1〉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IFLA, 1999)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자유를 지지하고 옹호하며 촉진한다.

IFLA는 인간이 지식과 창조적 사상, 그리고 지적 활동의 표현물에 접근하고,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갖고 있음을 선언한다.

IFLA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동일한 원칙의 양면임을 확신한다. '알 권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기본 조건이며,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정보접근의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IFLA는 지적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도서관과 정보 전문직의 핵심적인 책무임을 주장한다.

IFLA는 이에 따라 도서관과 도서관 직원들이 지적자유와 자유로운 정보접근,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준수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IFLA는 회원들이 이러한 원칙을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 도서관은 정보와 사상, 그리고 창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지식과 사상, 그리고 문화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도서관은 개인이나 단체의 평생학습, 자율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문화적 발전에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한다.
- 도서관은 지적자유와 발전에 기여하고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지원한다.
- 도서관은 지식과 지적활동의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촉진시킬 책임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보존, 활용하게 한다.
- 도서관은 자료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이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관점이 아닌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서관은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 조직, 배포하며 어떠한 형태의 검열에도 반대한다.
-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가 자료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종, 신념, 성별, 연령, 그 외의 어떠한 다른 이유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 도서관 이용자는 사생활 보호와 익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사서를 비롯한 도서관 직원은 이용자의 신원이나 그들이 이용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노출 시켜서는 안 된다.
- 공공재원으로 유지되며 공중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지적자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도서관의 사서와 직원은 이상의 원칙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사서와 도서관 전문직원은 고용주와 이용자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의 수행이 상충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책임이 우선한다.

- 우리나라는 식민지 상황, 분단, 독재 등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금서와 검열로 대표되는 사상통제의 역사를 거쳐 왔고, 이에 따라 이른바 이념 서적이라 불리는 도서가 금지되는 등(장덕현, 2011, 176)으로

인하여 지적자유에 관한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 1997년 한국도서관협회는 <표 2>와 같이 이용자에게 차별 없는 정보 제공과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선언」(2019 개정)을, 2023년 7월에는 <표 3>과 같이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표 2>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선언(2019)

도서관인은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활동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 이에 우리 도서관인은 스스로의 직업적 소명을 다짐하고 전문직의 긍지를 튼튼히 하고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 지표를 세워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2.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3. 도서관인은 도서관서비스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한다.
4. 도서관인은 직업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도서관인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여 도서관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권리자 간 이해의 균형을 추구한다.
6. 도서관인은 직업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관심에 우선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지적자유는 각국의 헌법상에 보장하는 기본권과 도서관 철학의 토대이자 사서직 윤리강령의 핵심 가치로서 그 맥을 같이 한다. 모든 이용자는 제한 없이 모든 관점에서 정보를 찾고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도서관과 사서는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제공하며, 검열에 반

대하고 사상의 자유를 증진하는 주체로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도서관은 일부 개인과 집단이 전통적 관습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포함한 지식, 상상력, 아이디어 및 의견을 담고 있는 도서관 자료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종류의 자료를 특별 취급하거나 서가에서 배제·폐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이 수집한 자료가 어떠한 사상이나 주장을 내포하고 있을지라도 도서관 및 도서관 직원이 그것을 지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3〉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2023)

도서관은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도서관 및 사서직의 권리선언에 입각해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특정 단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선정·보급한 '나다움어린이책'을 비롯한 일부 도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금서목록을 만들어 부당한 압력을 통한 열람 제한 및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압은 도서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지적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공적 시설로 존재하는 도서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국내외 선언문은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압박과 검열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도서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도서관인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선언」(2019)

'장서와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IFLA-UNESCO 공공도서관선언」(2022)

'도서와 기타 도서관 자원은 봉사대상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 정보, 계발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자료는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도서관은 정보와 계발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검열에 도전해야 한다.' -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권리선언」(2019)

둘째, 도서관은 헌법(제10조,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등)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과 사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자기검열 형태로 특정 도서를 배제할 수 없고,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도서관의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와 양육자, 사서와 사서교사, 그리고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서 또는 대출 여부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다.

셋째, 도서관은 국적, 민족과 인종, 종교적 성향, 성별과 나이, 교육적 수준,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선정·수집해야 한다. 이에 따른 이념적, 종교적 등의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한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해 검증하고 여과해 왔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외압이나 검열, 일괄 폐기, 이용제한도 단호히 거부한다. 오랜 금서의 역사를 돌아보면 당대의 검열과 봉쇄로 감금되었던 무수한 책이 후에 고전으로 격상되고, 귀환한 사실이 이를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22,625개 도서관을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최근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도되는 일체의 ‘도서 검열과 지적자유 침해’ 행위가 중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도서관의 중립성과 국민의 지적자유를 훼손하는 모든 외압과 검열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임을 표명한다.

2.2 검열

-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따르면 ‘검열(Censorship)’은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서, 신문, 잡지 및 기타의 출판물, 미술품, 영화필름 등을 검사, 열람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인 이유나 풍속, 관습 및 기타 이유 등으로 발생, 판매, 배포, 흥행 등을 금지시키는 행정사무이다.
- 『Oxford Reference』에서는 ‘검열’을 공개적으로 표현, 전시, 출판, 방송 또는 기타 배포되는 내용이 규제되거나 정보의 유통이 통제되는 모든 체제 또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통제를 위한 공식적인 근거는 정치적(예: 국가 안보), 도덕적(예: 특히 외설 문제와

관련하여 범죄 또는 도덕적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 사회적(예: 폭력적인 콘텐츠로 인하여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종교적(예: 신성모독, 이단) 이유 혹은 단지 당혹감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출판, 학문·예술 등에 대한 검열이 있어 왔다.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작자의 ‘자기검열’을 야기함으로써 자유로운 표현과 창작을 위축시키기도 했다. 또한 그 창작물을 수집·보존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검열과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 미국도서관협회(ALA) 『지적자유 매뉴얼』에는 검열과 관련하여 <표 4>와 같이 우려의 표명(구두불만), 도전, 검열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Garnar & Magi, 2021).

<표 4> 검열과 관련된 용어 정의

우려의 표명/구두불만(expression of concern/oral complaint):

개인이 도서관 장서 중에서 못마땅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이나 반대 의견. 우려의 표명은 때때로는 도전으로 이어진다.

도전(challenge):

개인이나 집단의 반대로 인해 도서관 자원을 제거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 도전은 단지 개인이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라기보다 교과과정이나 도서관에서 자료를 제거하여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도전은 종종 검열로 이어진다. 도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① 재심의 신청(request for reconsideration): 도서관이 자원을 제거하거나 그 접근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공식 서면 신청으로 도서관 및/또는 그 운영기구에 의해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경로의 절차를 거쳐 양식으로 제출된다.
- ② 공공연한 도전(public challenge): 도서관 자료의 가치에 문제에 제기하여 공개적으로 유포되는 성명으로, 요구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공중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기관의 조직을 벗어나 대중매체 및/또는 기타 등에게 보내진다.

검열(censorship):

도서관 자원에 대해 그 내용이나 작가/창작자 등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의 제기에 의거하여 도서관 운영기관이나 대표자가 해당 자원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억압, 배제, 삭제, 제거, 제한하도록 내려진 결정

☞ 초법적 압력(extra-legal pressure):

도서관 자료의 열람 금지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주민이나 조직적 집단에 의한 법적 조치나 압력의 위험. 이 용어는 도서관 정책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도서관 자료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도록 권한을 갖는 사람(예: 시장, 선출직 공무원, 학교 공무원)이 취하는 조치, 그리고 적절한 법원 명령을 얻지 않고 법 집행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요청 등을 말한다.

- 검열은 출판물의 부분적인 소멸, 절취뿐만 아니라 자료의 금지, 방해, 억압, 박탈, 제거, 라벨링, 이용제한까지 포함(이명희, 2004)하며, 통상 특정 자료에 대해 접근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검열의 주체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모로부터 발생하기도 한다(Maryland Library Association, 2017).

2.3 금지도서

- 금지도서, 즉 금서(禁書, banned book; prohibited book)는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또는 기타의 이유로 관청에서 출판, 판매를 금지한 도서를 말한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종교상 이유로 일반에게 열람을 금지한 도서의 목록이 존재했으며, 어떤 이유로 읽지 못하도록 금지된 도서의 목록을 금서목록이라 한다(『문헌정보학용어사전』).
- 19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금서는 그 본질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성 금서와 반체제적인 정치 관련 도서나 고발문학 또는 폭로문학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음란물이 금서의 주류를 이루어가는 대세이다. 또한 1995년도 이후 인터넷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명희, 2004). 이에 김삼웅(1987)은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금서를 대별하고 있다.

- ① 반체제적인 정치 관계 책: 정치적으로 기성체제, 기성제도에 대항하여 이를 비판하거나 고발, 개혁하려는 책
 - ② 종교적인 이단책
 - ③ 천체에 관한 책이 금서로 규정된 경우
 - ④ 음란관계에 관한 책: 문학성이 높은 예술적인 책을 음란물로 몰아 금서로 만든 경우가 많음
 - ⑤ 이데올로기성 금서: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기성체제, 기성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책
 - ⑥ 고발문학 또는 폭로문학
- 도전받는 도서(Challenged Books): 미국에서 금서는 크게 반체제적인 도서, 종교적인 이단서적, 그리고 음란물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실제 ‘금지(banned)’ 되기보다는 ‘도전받는(challenged)’ 정도에 불과한데 왜 ‘Challenged Books Week’ 대신에 ‘Banned Books Week’라는 명칭을 쓰는지에 대하여 ‘도전받는 것에 불과한 책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들은 금지하기 위한 시도로 나타나며 성공적인 도전은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 대신에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이러한 도전 및 금서운동에 대한 자각과 경계 때문에 실제로 금서가 된 책들은 적다’라고 밝히고 있다(이명희, 2004).

2.4 간행물윤리위원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7조에 근거하여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표 5>와 같이 동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청소년보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해간행물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 사회질서 유지를, 후자는 선정성, 폭력·잔인성, 성범죄와 유해 약물, 윤리관, 반사회성과 비윤리성, 청소년 유해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 헌법을 비롯한 관계 법률, 규정에서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각기 차이가 있고 모호하며 이 역시 검열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만 도서 심의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지만 헌법의 다른 조문과 관계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크지 않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차원에서 위임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5〉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구분	내용
심의대상	•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 •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간행물 제외) • 특수일간신문(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 제외), 일반주간신문(정치, 경제분야 제외), 특수주간신문(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 제외), 잡지(정치 경제, 산업, 과학, 시사, 종교분야 제외)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 의뢰한 간행물 •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단체, 지도, 단속기관 또는 30인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위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 기타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심의 의뢰 또는 납본된 간행물 • 간행물의 발행인 및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는 자가 그 간행물이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에 문의하는 간행물 • 전자출판물 등

구분	내용
심의기준	제1장 일반심의기준 제1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해야 한다. 1.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되, 표현된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2. 반국가성, 음란성, 반사회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 3.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과 간행물의 특성을 고려한다. 4. 간행물의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건전한 사회통념과 윤리관의 위해(危害) 여부를 고려한다. 6. 간행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한다. 7.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간행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한다. 제2장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2조(유해간행물 심의기준)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히 부정하여 국가의 존립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 나.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다. 불법·폭력적인 계급투쟁과 혁명을 선동하여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것 나. 동물과의 성행위, 시신과의 성행위, 집단 성행위, 가학성(加虐性)·피학성(被虐性) 음란증 등 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近親相姦)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다. 강간(強姦), 윤간(輪姦)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구분	내용
	가. 잔혹한 살인·폭행·고문 행위 등 각종 물리적 형태의 폭력 행위를 자 극적으로 묘사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명백히 조장하는 것 나. 마약 등 중독성 약물의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여 사회 전반의 건 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 제3장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제3조(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준) 1. 일반 심의 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해당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 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명 이상이 해당 매체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 체물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 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 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 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 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 유해업소예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3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3.1 기본 방향

- 주요 국내외 선언문은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압박과 검열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이를 참고하여 자관의 도서관 정책에 반영한다.

국내외 주요 선언문

‘도서관인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 접근을 저해하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 윤리선언」(2019)

‘장서와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IFLA-UNESCO 공공도서관선언」(2022)

‘도서와 기타 도서관 자원은 봉사대상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 정보, 계발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자료는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견해 때문에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도서관은 정보와 계발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검열에 도전해야 한다.’

-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권리선언」(2019)

- 개별 도서관은 다음 <표 6>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관의 서비스 전반에서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표 6〉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개별 도서관 정책 수립 시의 고려 사항

- ① 도서관 정책에 지적자유 보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
 -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한국도서관협회, 2023) 채택
- ② 도서관 자료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장서개발정책을 갱신·유지한다.
- ③ 개별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검열 등 지적자유 침해에 대한 대응 절차를 명문화한다.
- ④ 이용자, 사서 및 도서관 직원, 상위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도서관 자료의 선정과 수집, 서비스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공문화한다.

- 도서관 자료에 대한 검열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음을 민원인에게 고지하되 민원인의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
-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에 있어 지적자유 침해가 행해질 경우,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서면 접수 및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내부 위원회(도서관 운영위원회 혹은 자료선정위원회)가 해당 민원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재심의 과정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 자료 및 서비스는 기존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또한 민원인으로부터 악성 민원 및 부당한 요구가 접수되는 경우, 기관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도서관 사서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개별 도서관의 지적자유 침해는 도서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kla.kr)의 ‘지적자유창구’에 사안 및 대응 결과를 공유한다.

3.2 자료선정과 수집

- 도서관은 모든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인 상황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도서관 및 사서직은 「도서관인 윤리선언」에 입각하여 자료를 선정·수집한다.
- 도서관은 자관의 장서개발정책에 지적자유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여 자료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책을 유지하고 외부의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서의 개인적 가치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서에 의한 자기검열 역시 검열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제별 자료선택이나 장서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지침으로써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중립성을 유지한다.
- 민원 발생 시 도서관은 민원인에게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자료선정지침)에 근거하여 자료를 입수하였음을 고지하되, 민원인(단체)의 도서관 자료에 대한 의견은 존중해야 한다. 다만, 재심의 종결 전까지 해당 자료는 계속해서 다른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서관 밖의 어느 누구도 자료선정과 수집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과 독서의 자유, 검열 및 금서의 부당함에 대하여 알리고 지적자유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도록 초법적인 압력을 가하는 집단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3.3 도서관서비스

-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는 도서 검열뿐만 아니라 매체별 자료와 서비스, 도서관 프로그램과 공간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서비스와 운영 전반에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과 관련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용자의 국적, 민족과 인종, 종교적 성향, 성별과 나이, 교육적 수준, 사회적 지위,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도서관 장서와 서비스에 동등하고 공평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이용자의 도서관 자원 및 시설의 사용 기록, 웹 서비스, 컴퓨터 사용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스스로 관심 분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탐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용자의 관심주제가 검사되거나 조사되지 않아야 한다.
- 아동 및 청소년의 도서관 장서 및 서비스의 이용은 부모와 양육자, 사서와 사서교사, 그리고 교사의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독서 또는 대출 여부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다. 도서관 장서와 서비스는 정당한 이유(법적판결 확정 등)가 없는 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3.4 위원회 운영 및 보호

-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등의 편향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검증·여과하며, 어떤 형태의 외압이나 검열, 일괄 폐기, 이용 제한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적법한 기구이므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민원 발생 시에 재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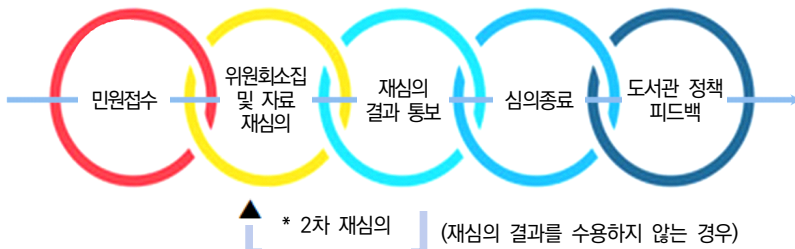
회를 소집·운영할 수 있도록 내규와 절차를 명문화하고, 도서관 운영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민원인이 도서관의 재심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각하 진행 및 법적 문제 제기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관장은 <표 7>과 같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민원처리 담당자 및 위원회 위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표 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48호) 발췌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5 자료 재심의



〈그림 1〉 도서관 자료 재심의 절차

1) 민원 접수

- 도서의 검열, 부당한 열람 제한 등 지적자유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민원을 서면을 통해 접수받는다.(서식 1, 2) 단, 이 경우는 민원인 스스로 해당 자료의 위법성과 도서관 장서로 부적절함을 설명하고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민원인에게 <그림 1>과 같이 재심의 절차 및 일정을 공지한다.

2) 위원회 소집 및 자료 재심의

- 민원 내용에 대해 도서관 내 협의를 통해 재심의위원회(도서관운영위원회 혹은 자료선정위원회)를 소집한다. 재심의 절차와 심의 기준은 도서관 내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심의는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원인의 요구에 대한 합리와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이므로, 외부의 위력 행사에 흔들리지 않고 심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내규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기관장의 재량 또는 기관 내의 협의 정도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향후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 도서관은 지적자유를 수호하고 독서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주지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고 재심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 재심의위원회는 자료의 일부가 아닌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재심의 결과 통보

- 해당 자료의 재심의 결과를 정해진 기한(60일 권장) 내에 민원인에게 서면 통보한다.
- 민원인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자관의 도서관 지적자유와 관련된 정책과 심의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4) 심의 종결 · 2차 재심의 회부(이첩)

- 민원인에게 자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후에 사안을 종결하며, 회의록은 보관한다.
- 민원인이 해당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을 희망할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을 종료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 제기 및 재심의 요청은 불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도서관 정책 피드백

- 도서관은 재심의 결과를 도서관 내외에 공유하여 항상 공정한 정보의 접근 및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해당 민원이 종료된 이후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개별 도서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도서관 내규를 개정한다.
- 검열 등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개별 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계가 연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적자유 창구'(<https://www.kla.kr>)에 사안 및 대응 결과를 공유한다.

[서식1]

도서관 자료 재심의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기관명(단체명)			
심의물	자료명			
	자료유형			
	저자/제작자명		발행/제작 연월일	
	그 밖의 사항			
위 자료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서관운영위원회위원장(각 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심의물이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서식 2)			
유의사항				
가. 도서관 선정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각 심의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심의 결과 통보 이전까지 해당자료는 도서관 장서로 계속 열람 및 이용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결정 → 결재 → 통보				
신청인 도서관 (각 심의기관) 도서관운영위원회 (각 심의위원회) 도서관 (각 심의기관) 도서관 (각 심의기관)				

[서식2]

도서관 자료 재심의 신청 사유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기관명(단체명)	
심의물	자료명	
	자료유형	
	저자/제작자명	발행/제작 연월일
	그 밖의 사항	
재심의 신청 사유(※ 필요시 별지 첨부 가능)		
1) 이 자료에 대한 재심의 신청의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		
2) 자료 전체를 검토하셨습니까?		
3)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4) 해당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에 요청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4

향후 과제

- 도서관계는 지적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내·외 도서관협회나 전문가 단체가 채택한 선언문이나 윤리선언에서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다. 「도서관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서직이 현재와 같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사서직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지적자유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과 도서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가칭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告示)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도서관의 중립성을 보장하며, 사서직의 자료선정권 보장과 자기검열을 차단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근거로 작동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2019년 전문위원회인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지적자유창구’를 개설하여 지적자유 침해 사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로 교수 및 현장 사서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위원은 외부 위촉직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는 한계가 있다. 도서관 지적자유 보장을 위한 전담팀이 부재

한 현재 상황에서 미국도서관협회(ALA)와 같은 전면적 대응과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 도서관과 사서직을 대변하는 한국도서관협회는 개별 도서관에서 발생한 지적자유 침해 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와 전담 인력 등 인력풀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검토하고 도서관계의 합치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기관·단체와 도서관인의 적극적인 회원가입과 관심의 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1876년 결성된 미국도서관협회(ALA)의 2019년 기준 회원수가 약 58,000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마지막으로 각급 도서관 구성원 간, 도서관 구성원과 이용자 간, 지역 주민 간, 도서관의 이해관계자 간 등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과 지적자유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한 문화 조성에 주력할 필요성이 있다. 도서관 및 공동체와 함께 도서관 지적자유와 독서의 자유, 검열 및 금지도서 등 지적자유 침해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적자유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금서 읽기’ 혹은 ‘재심의 도서 읽기’ 등 이슈의 중심에 선 자료를 공유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서포터즈가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앞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는 도서 검열뿐만 아니라 매체별 자료와 서비스, 도서관 프로그램과 공간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료수집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서비스와 운영 전반에 도서관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Ⅰ 참고문헌 Ⅰ

- 김신영(2024).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양상과 대처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189-217. <https://accesson.kr/liss/v.55/2/189/43339>
- 배경재(2022). 지적자유와 도서관 장서검열 문제의 현장 인식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2), 277-294. <https://doi.org/10.4275/KSLIS.2022.56.2.277>
- 이명희(2004).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노력과 금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1), 193-216.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429535567995.pdf>
- 장덕현(2011). 장서개발에 있어서 지적자유 의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1-18. <https://doi.org/10.16981/kliss.42.1.201103.165>
- 정현태(2000). 공공도서관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1939). Library Bill of Rights.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2023, March 20). Book Ban Data, Available: <http://www.ala.org/advocacy/bbooks/book-ban-data>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2024, March 4). Censorship by the Numbers. Available: <http://www.ala.org/advocacy/bbooks/by-the-numbers>
-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18). Free Access to Information Statement, Available: <https://read.alia.org.au/alia-free-access-information-statement>
- Canadian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2019). Intellectual Freedom Position Statement. Available: <https://cfla-fcab.ca/en/guidelines-and-position-papers/statement-on-intellectual-freedom-and-libraries/>
-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 Information Professionals (2005). Intellectual Freedom, Access to Information and Censorship. Available:

<https://www.ifla.org/wp-content/uploads/2019/05/assets/faife/statements/lastat.pdf>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 Information Professionals (2022). Intellectual Freedom,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for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Available: http://www.cilip.org.uk/resource/resmgr/cilip/policy/intellectual_freedom/intellect_free_policy_v1.pdf

Florida Library Association (2022). Intellectual Freedom Manual. Available: https://www.flalib.org/assets/Website/2022-2023_FLA-Intellectual-Freedom_Manual.pdf

Garnar, M. & Magi, T. ed. (2021). Intellectual Freedom Manual(10th e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hicago.

IFLA (1999). 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handle/123456789/1441>

IFLA (2023). Empowering libraries to lead in developing collections: President's statement on censorship. Available: <https://www.ifla.org/news/empowering-libraries-to-lead-in-developing-collections-presidential-statement-on-censorship/>

Maryland Library Association (2017). Intellectual Freedom Manual. Available: <https://www.mdlib.org/files/docs/divisions/ifap/ifmanual.pdf>

Netherlands Association of Librarians (1993). Professional Charter for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Available: <https://www.ifla.org/wp-content/uploads/2019/05/assets/faife/codesofethics//netherlands.pdf>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Reference. Available: <https://www.oxfordreference.com/>

Spanish Association for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2013).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nd Informational Professionals. Available:

<https://www.ifla.org/wp-content/uploads/2019/05/assets/faife/codesofethics/spain-nationalcodeofethics.pdf>

日本図書館協會 (1979). 図書館知る自由. 출처: <https://www.jla.or.jp/library/gudeline/tabid/232/Default.aspx>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발행일 2024년 8월 1일

발행처 한국도서관협회

발행인 곽승진

홈페이지 <https://www.kla.kr>

ISBN 978-89-7678-395-0 (13020)

발간등록번호 11-B370019-000011-14

* 이 책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비매품/무료



9 788976 783950

13020

ISBN 978-89-7678-395-0